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48
----------	-----

2023. 7. 13.(목)
행 정 문 화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 출 자 : 김성대 의원 등 7인
- 나. 제출일자 : 2023년 7월 4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5일
- 라. 상정일자 : 2023년 7월 13일
 -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성대 의원)

가. 제안사유

- 최근 체육계 (성)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로 운동선수·체육인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음.
- 본 조례안은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충청북도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운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스포츠인권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충청북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제4조)
- 스포츠인권헌장(안 제5조) 및 스포츠인권 교육(안 제6조)
- 스포츠인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 설치·운영 등 및 비밀누설 금지(안 제8조~제9조)
- 스포츠인권 실태조사(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가. 제정의 필요성

-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심석희 선수 미투 사건 등 스포츠폭력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체육계 인권침해 현상을 바로잡고자 「국민체육진흥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 이 시기 개정된 같은 법 제18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 보호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음.
- 충청북도 내에서도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등 지역선수단 내 일련의 성폭행, 성희롱, 가혹행위 의혹 등이 불거진 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체육회가 스포츠인권 침해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현재 충청북도는 도·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관리와 인권실태 점검을 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운동선수와 체육인들을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 알맞게 대응하며, 그들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임.

-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스포츠인권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곳은 총 12곳임(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제주도).

《 타 시·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지역	조례명	제·개정일
1	인천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2020-10-07
2	충남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10-05
3	대전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2020-10-14
4	대구	대구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2020-12-10
5	경북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0-11-05
6	광주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20-12-15
7	전북	전라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4-09
8	강원	강원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1-06-04
9	울산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2021-07-08
10	부산	부산광역시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2021-12-29
11	경기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2022-04-21
1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2023-03-24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7조	스포츠인권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2조	정의(스포츠인권, 운동선수, 체육인)	제8조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 설치운영 등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10조	실태조사
제5조	스포츠인권현장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	스포츠인권 교육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적용례)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

-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운동선수 및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조례안의 목적이 있음을 밝힘.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인권’과 ‘운동선수’ 및 ‘체육인’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운동선수·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 노력을 하여야 하며, 스포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 도지사는 △스포츠인권보장의 기본이념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전략 △체육계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 포함) 관련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안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충청북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음.

○ 안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 도지사는 도내 운동선수·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와 일정조율이 불가피하다는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임.

○ 안 제7조(스포츠인권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충

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하여 ‘충청북도 스포츠인권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안 제8조(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 설치·운영 등)

-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제1항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체육단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안 제9조(비밀누설 금지)

-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 관계자 등은 자칫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됨을 명시함.

○ 안 제10조(실태조사)

-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련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도지사는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1)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8.>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8. 18.>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운동선수와 체육인들을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여 온전히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안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내 활동하고 있는 운동선수·체육인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사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임.
- 이러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쳤는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
- 해당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스포츠인권침해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스포츠인권의 존재와 가치를 재조명하며, 이를 보장하고 증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하였음. 본 조례 제정으로 말미암아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는데 일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운동선수와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행복감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운동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운동선수 및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운동선수”란 충청북도체육회·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동선수·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운동선수·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포츠인권보장의 기본이념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전략
3. 체육계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 포함) 관련 실태조사
4. 체육계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 포함) 예방교육 및 홍보
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충청북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도지사는 도내 운동선수·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스포츠인권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운동선수·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스포츠인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운동선수·체육인

다.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스포츠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의 구성·운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운동선수·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위탁한 신고 및 상담시설은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로 본다.

관련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본조신설 2020. 2. 4.]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8.>
-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8. 18.> [본조신설 2020. 2. 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2021. 2. 19., 2021. 6. 1.>

1. 법 제2조제9호가목의 체육단체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2021. 2. 19.> [본조신설 2017. 3. 15.]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제1호

○ 사 유

- 본 조례는 지원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스포츠인권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 지원으로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 시설은 도와 체육회의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중으로 비용 산정 어려움

○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정진자